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9. 29 선고 2016나519 판결 [점유회수 및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9. 29 선고 2016나51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7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 선고 2016. 9. 29.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7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 가. 통영시 C 전 1,220㎡ 및 통영시 D 대 132㎡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 나. 통영시 C 전 1,22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ㄱ)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대형 저수조(간이상수도 대형저수조탱크) 견고한 건축물 150㎡'를,
 - 다. 통영시 C 전 1,220㎡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창고 6㎡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창고 8㎡'를,
 - 라. 통영시 D 대 132㎡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목조 및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 창고 10㎡'를 각 인도하라.
3.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2013. 3. 14.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 및 원상회복할 때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부터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당심에서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큰어머니와 마을주민들이 약 35년 전에 단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C

토지에 저수조와 수도관 등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의 각 주택으로 식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하여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설치된 저수조 등 시설에 대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사실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M가 통영시 N(지번 주소는 통영시 O)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전기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C 토지에 설치된 저수조 등 시설에 대한 원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있는 저수조 등 시설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위 저수조와 수도관 등 시설과 이 사건 C 토지에 식재된 원고 소유 수목들을 피고와 선정자들이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저수조 등 시설과 수목의 훼손 그 자체로 인한 손해와 식수를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저수조 등 시설의 설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저수조 등 시설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수조 등 시설의 형상,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 토지의 정착물인 위 저수조 등이 거래 관념상 위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C 토지에 그 주장과 같은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수목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다(위 수목은 이 사건 C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저수조 등 시설과 수목의 훼손 그 자체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와 선정자들이 저수조 등 시설을 파괴하고 폐기물 등이 저수조에 혼입되게 하는 등으로 오염시켜 원고로 하여금 식수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저수조 등 시설과 수목 등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원고에 대한 협박과 공갈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들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협박 또는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진

판사곽병수

판사정재오

별지